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84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2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06. 12. 30)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변경('07. 3. 9)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 하여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삭제(안 제2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06. 12.30 개정)

나. 제38조 본문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안 제38조)

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 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범위내의 토지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안 제39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4호)

라.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06. 12. 30개정)

마.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본문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조1호 본문중 “200만원”을 “600만원” 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본문중 “100만원”을 “ 300만원” 으로 한다(안 제63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9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라. 표준안(행정자치부)

마.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결과 : 접수 의견 없음
 - 가) 예고기간 : 2007. 10. 18 ~ 11. 8 (20일간)
 -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 공고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39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제5호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중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중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를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를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p>	<p style="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삭제 ></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 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 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생략)</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 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 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제38조 (조성원가 매각) <u>영 제27조</u> <u>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u>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 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 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4. (생략)</p>	<p>제38조 (조성원가 매각) <u>영 제42조의</u> <u>규정에 의하여</u> ----- ----- ----- ----- -----</p> <p>1.~4. (현행과 같음)</p>

<p>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u></p> <p>2.~3. (생략)</p>	<p>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 ----- ----- <u>< 삭제 ></u></p> <p>2.~3. (현형과 같음)</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u>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u>)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u>분할매각할 수 있다.</u></p>	<p>4----- ----- ----- ----- ----- ----- ----- ----- ----- ----- ----- <u>-----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u>)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u>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u></p>

<p>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u>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u></p>	<p>5.----- ----- -----<u>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u>----- ----- -----.</p>
<p><u>제43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u></p>	<p><u>< 삭제 ></u></p>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u>총 보상금은 1,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u></p> <p>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u>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u>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p> <p>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u>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u>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 -----, <u>총 ,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u></p> <p>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u>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u>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p> <p>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u>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u>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관계법령 발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건축법

第49條 (垜地의 分割制限<개정 1999.2.8>) ①建築物이 있는 垜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分割할 수 없다.<개정 1999.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